

##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64조,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6. 18.

###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



- 건 명: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
-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, 고용보험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 불능 사유
				처분 사유	
조O성	1969.11.28.	경기 의정부시 훈민로(이하생략)	실업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	고시임금액 이상 재취업으로 부지급 통지	폐문 부재

4. 공고기간: 2026.6.18.-2026.7.2. (15일간)

5. 문의사항: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강희정(☎ 031-828-0919)